

# 학칙 개정(안) 공고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조제3항 및 「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」 제66조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(안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## I 개정사유 및 내용

1. 개정사유 : 졸업평가 불합격으로 졸업 시기가 지연되고, 미등록 제적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졸업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.
2. 개정내용 : 2023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졸업평가 제도를 폐지하고, 이를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, 삭제 및 부칙을 신설함.

## II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46조 (졸업논문)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거나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. ②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	제46조 (졸업논문) <삭제>	조 삭제
제47조 (학위수여) ① 본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의 심사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전공에 따라 학위수여표<별표 3>에 의한 별지 <서식 1>의 학위증을 수여한다. ②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의 심사 또는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	제47조 (학위수여) ① 본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<u>이수한 자에게는</u> 졸업을 인정하고 전공에 따라 학위수여표<별표 3>에 의한 별지 <서식 1>의 학위증을 수여한다.  ② <삭제>	항 수정  항 삭제

<p><u>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증을 수여한다.</u></p> <p>③ ~ ⑤ 생략</p>	<p>③ ~ ⑤ 현행과 같음</p>	
	<p><u>부 칙 &lt;2023. 00. 00&gt;</u></p> <p><u>(1)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(2) 제46조 삭제 / 제47조 개정</u></p> <p><u>(3) (적용) 이 개정사항은 202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.</u></p>	<p>부칙 신설</p>

### Ⅲ 의견 수렴

위의 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제출기한 : 2023. 2. 2(목)까지
2. 제출처 : kiyw2k@cufs.ac.kr
3. 제출방법 : 제출자의 인적사항(성명, 소속학부/과, 학번, 연락처)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